

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지

#### 회신내용

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,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할 것임

#### 5-5-13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가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

#### 질의요지

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 소유자가 토지 및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,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

#### 회신내용

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얻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,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

#### 5-5-14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자격 및 주택공급이 가능한지(‘16.08.01.)

#### 질의요지

대표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신청권을 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등의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

#### 회신내용

가.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

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,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분양할 수 있도록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, 질의하신 분양신청자격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원 또는 대표조합원에게만 있는 것으로 판단됨

#### 5-5-15 사업시행인가 60일 이후 분양공고절차 진행시 조치 사항(‘16.06.07.)

#### 질의요지

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경과 후 개략적인 부동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등 분양공고 절차를 이행한 경우 해당 분양공고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 경우 시장·군수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

#### 회신내용

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질의와 같이 위 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분양공고의 유효여부 및 시장·군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동 기간